

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-1665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3.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○ 공고기간: 2026. 7. 06. ~ 2026. 7. 20. (15일간)

○ 공고내용

1. 행 정 처 분 제 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91라3691 등 8건(붙임 참고)			
	차 명				
3. 운 행 정 지 사 유	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 적 근 거	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 할 관 청	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해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	주소	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4, FAX 032-560-2793)		

○ 유의사항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·요청 등)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(해제)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.

나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

리법」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, 또한 같은 법 제81조(벌칙) 및 제82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제13조(말소등록)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(벌칙)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의처: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4)

○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91라3691	포터 II(PORTER II)	조*현	2026.06.29
2	177버8703	Mercedes-Benz GLE400 d 4MATIC Coupe	하*****)	2026.06.26
3	169하2903	팰리세이드(PALISADE)	메*****)	2026.06.24
4	239보1904	Mercedes-Maybach S500 4Matic	이*정	2026.06.22
5	50조8790	싼타페(SANTAFE)	김*	2026.06.15
6	175나5443	BMW X7 xDrive40i	메*****)	2026.06.15
7	230무2949	쥘 랭글러 사하라 4xe	케***** 사	2026.06.11
8	46서1818	Mercedes-Benz EQE350 +	하*****)	2026.06.11